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10

발의연월일: 2025. 5. 14.

발 의 자:정동영・이성윤・최민희

민형배・김 현・이정헌

박민규 • 노종면 • 김우영

이훈기 • 이해민 • 윤준병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주택의 전용면적, 세대 수,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차 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지역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.

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 심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 또한 지역별로 주차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차의존도 및 1인당자동차 등록 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주차기준이 적용되어생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,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

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며, 단순한 주차면적기준을 넘어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,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의2 신설).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5조의2(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)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 건설기준등으로서 주차장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 특별시와 광 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특별자치도 내에 위치 한 도청소재지 지역은 광역시로 본다.
 -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.
 - 1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의 현황
 - 2. 「주차장법」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
 - 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 확보
 - 4. 「소방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등

소방활동 및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의2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5조의2(주차장 설치기준에 대
	한 특례) ① 제35조제1항에 따
	른 주택건설기준등으로서 주차
	장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
	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
	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특
	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도청소
	재지 지역은 광역시로 본다.
	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
	등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
	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관
	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
	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
	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
	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
	<u>할 수 있다.</u>
	1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등
	록한 자동차의 현황
	2. 「주차장법」 제3조에 따라
	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의
	조사

- 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 확보
- 4. 「소방기본법」 제21조의2에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등 소방활동 및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